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92호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공 고

- | | | | |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3 호 |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2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4 호 |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9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5 호 |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8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6 호 | 「남동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31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7 호 |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39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8 호 |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50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9 호 |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60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3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신설(안 제11조제7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4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발 의 자 : 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신설(안 제11조제7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성”을 “형성,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기회 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

나.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라.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마.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형 성,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기회 보장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사회적 고립청년</u> ”이란 제1 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 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 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 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 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 ----- ----- ----- -----.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

나.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

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

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

임 활성화 사업

라.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

마.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원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 훈련, 심리 지원 등을 위한 사업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심리지원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4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
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5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공동발의자 : 김재남·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
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 이동노동자 쉼터(휴게실) 운영 경비

관련조문 :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5조, 제6조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5년(2023년~2027년)

- 인 건 비 : 공공근로 활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사무관리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사업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조성비	70,000	0	0	0	0	70,000
총 비용		9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90,000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보조금	시비	47,000	12,000	12,000	12,000	12,000
구비	일반회계	47,000	12,000	12,000	12,000	12,000
합계		94,000	24,000	24,000	24,000	24,000

3. 부대의견

- 상권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 필요(추후)
- 타 지자체는 광역단체와 매칭 사업을 통한 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운영 가능
- 인천시에는 해당 조례가 없어, 부처 공모사업 신청 또는 시 조례 제정 후 매칭 사업 진행 필요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47,0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0
세 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9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9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7,0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0
	보조금	국비					
		시비	47,000	12,000	12,000	12,000	95,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47,0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0
	지방세		47,000	12,000	12,000	12,000	95,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채무부담, 민자 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5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절차 삭제
(안 제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
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6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절차 삭제 (안 제2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2”를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를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7조”를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각 호

제10조 중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 ----- ----- ----- ----- ----- --. <단서 삭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삭제>

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 6. (생 략)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
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5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생 략)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
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
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
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
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
조 및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사
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
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2호-----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계획
서를 제출받아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
영 조례」 제7조-----

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
2.23.)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
囑) 할 수 있다.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
영 조례」제8조 각 호

2. 3. (생 략)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
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제8조 각 호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
----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	골목형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건축일)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²	건물 연면적:	m ²	영업장 면적:	m ²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6호

남동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남동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표창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7
----------	------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회의 범죄예방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표창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갹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참고자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7호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 제4장 활동지원급여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1조)
-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2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 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8
----------	------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 제4장 활동지원급여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1조)
-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2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 칙”을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개정하며, 같은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
<신설>	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4. ㆍ 5.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장 보 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ㆍ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6조(지원사업)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장 활동지원급여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
련 지원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자료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참고자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8호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돕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행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홍보 및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9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공동발의자 : 황규진·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청소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돕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행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홍보 및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6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수련시설
 -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남동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일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표창) 구청장은 관내 모범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여 남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9호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계획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90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계획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도로교통법」 제1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집중조명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 최소화 및 경제적이고 친환경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근거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비 : 매년 평균 20개 설치(5,000만원) 기준으로 산출
-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 : 매월 평균 전기요금 금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설치비 및 전기요금 : 322,000천원(2023~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시재배정 100%
- 어린이보호구역 외 : 구비 100%
-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횡단보도 투광기 추가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

작성자 :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475,000	475,000	475,000	475,000	475,000	2,375,000
세 출		64,400	64,400	64,400	64,400	64,400	322,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75,000	475,000	475,000	475,000	475,000	2,375,000
	보조금	국비					
		시비	475,000	475,000	475,000	475,000	2,375,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					
기 금		-					
공기업 특별회계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참고자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